

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 - 제39호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출연월일 2006. 7 13.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지급 대상(안 제2조)

-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
-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-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

나. 지급기준(안 제3조)

-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이 경과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1, 2년경과는 100분의3, 3년경과는 100분의5로 차등 지급

다. 지급한도는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이하(안 제4조)

라.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5조)

- 위원장을 총무국장,위원은기획담당관,세무과장,회계과장,도로교통과장으로 하여 5인으로 구성함

마. 징수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(안 제6조 및 제7조)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(2006. 5. 24~ 2006. 6. 16)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
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대상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(이하“포상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(별정직·기능직·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.)
2.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3.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
②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사천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·관허사업제한·「조세범처벌법」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,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. 다만,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특별공적

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

제3조(지급기준)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.

1.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
2.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
3.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4.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5. 도로·하천·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자 :징수세액의 100분의 5
6.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. 다만,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. 단,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

제4조 (지급한도)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1.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(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)
2.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.

제5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사천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한다) 소속하에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담당관·세무과장·회계과장·도로교통과장 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
2.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
3.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.

제6조(지급신청)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해당부서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.

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부서장(읍·면·동장을 포함한다)이 신청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급)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90조의 규정에 의하되,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8조(환수)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.

제9조(대장비치) ①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·정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

수 신 : 사천시장

참 조 : 세무과장

발 신 : (인)

(단위 : 원)

구 분	건 수	금 액			포 상 금
		합 계	본 세	가 산 금	
합 계					
과년도 채납액 징 수	소 계				
	1년경과				
	2년경과				
	3년이상 경과				
숨 은 세 원 발 굴	소 계				
	미 등 기				
	탈루·은닉 세 원				
	무단점용				
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	세정발전				
	세입증대				

※ 첨부 : 1.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.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

(단위 : 원)

징수 월일	징수자		징수내역					체납자		담당 주사 인	특별징수 공적사유	포상금	지급일
	직급	성명	구분	년도 납기	고지서 번호	세목	징수액	주소	성명				

※ 1. “구분”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(1년차, 2년차, 3년차이상)를 표시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

(단위 : 원)

납기	부과자(제보자)			세목	구분	발굴 세원	납세의무자		징수 일자	담당 주사 인	포상금	지급 일
	직급	주소	성명 (주민등록번호)				주소	성명				

※ 1. “구분”란에는 미등기, 탈루·은닉세원, 무단점용, 세입증대 등을 표시

관 련 법 령 발 취

【지방세법시행령】

제29조 (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등)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. <신설 1994.12.31>

1. 고지유예 : 납기개시전에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(이하 "징수유예사유"라 한다)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
2. 분할고지 :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
3. 징수유예 :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
4. 체납처분등의 유예 :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등을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처분등을 유예하는 경우

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안으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·군수가 정한다. <개정 1994.12.31>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법 제4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,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시장·군수가 정한다. <신설 1984.12.31, 1994.12.31>

제39조 (환부이자 계산)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한다. <개정 1981.12.31, 1995.12.30, 2001.12.31, 2005.1.5>

【지방재정법시행령】

제58조 (세출예산의 이월) ①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.

1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
3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
4.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

②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.

1.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·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
2.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
3.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

③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"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·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. 이 경우 이월한도는 당해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5로 한다.